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2013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하도록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장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부칙)
나.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조문 정리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면제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제1항제1호”로 한다.

조례 제916호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 제3조 중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 ----- -----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 ----- -----.

1. (생 략)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 (현행과 같음) 2. ----- 제19조의3제1항----- ----- -----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 -----
--	---

현행	개정안
부칙(조례 제916호, 2012.4.9)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16호, 2012.4.9) 제3조(적용시한) ----- -----. <후단 삭제>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1. 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⑤ 생략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본조신설 2011.7.21]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 (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 4. 생략

② ~ ⑥ 생략

[본조신설 2011.7.21]